

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

상명대학교(이하 "위탁자"이라 한다)와 한국모바일인증 주식회사(이하 "수탁자"이라 한다)는 "위탁자"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"수탁자"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"위탁자"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"수탁자"에게 위탁하고 "수탁자"는 이를 승낙하여 "수탁자"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)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1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)

"수탁자"는 기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다.

- ① "본인확인서비스"의 서비스 운영 위탁

제4조 (위탁업무 기간)

본 계약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계약 기간 : "본인확인서비스" 계약기간과 동일

제5조 (재위탁 제한)

① "수탁자"는 "위탁자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위탁자"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.

② "수탁자"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"수탁자"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"위탁자"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"수탁자"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·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 (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

- ① "수탁자"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 "수탁자"는 계약이 해지되거나, 계약기간 또는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"수탁자"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"위탁자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

- ① "위탁자"는 "수탁자"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, "수탁자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 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 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 4. 목적 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 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 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"위탁자"는 "수탁자"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수탁자"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"위탁자"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"수탁자"를 교육할 수 있으며, "수탁자"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위탁자"는 "수탁자"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9조 (정보주체 권리보장)

- ① "수탁자"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.

제10조 (개인정보의 파기)

- ① "수탁자"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"위탁자"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.

제11조 (손해배상)

- ① "수탁자" 또는 "수탁자"의 임직원 기타 "수탁자"의 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수탁자" 또는 "수탁자"의 임직원 기타 "수탁자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"위탁자"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"수탁자"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위탁자"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위탁자"는 이를 "수탁자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제12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① "위탁자" 또는 "수탁자"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30일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
2.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본 계약에 관한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
3. 상대방에게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진행된 경우
4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주요재산의 양도, 압류, 가압류 등으로 상대방의 신용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6.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7. 기타 상대방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8. "수탁자"가 수탁자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
② 전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기본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.

제13조 (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)

① 본 계약은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모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기본 계약이 해지·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·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때까지 유효하다.

②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 발생한 본 계약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 및 제11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(비밀유지)

"위탁자"와 "수탁자"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, 유출,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 (분쟁의 해결)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, 소송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"위탁자"와 "수탁자"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03월 01일

위탁자

업 체 명 : 상명대학교
사업자등록번호 : 102-82-01669
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
20
대표이사 : 백 응 가 (인)



수탁자

업 체 명 : 한국모바일인증(주)
사업자등록번호 : 113-86-00654
주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
16층
대표이사 : 박 종 진 (인)

